

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

도시건설위원회(공원녹지과)

의안번호	제 362 호
제 출 자	성북구청장 (2024. 11. 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 진 만

1. 제안이유

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도시의 조성과 정원문화의 발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원 관련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정원문화의 육성, 발굴, 진흥 및 정원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6조)
- 라. 마을정원사의 양성, 인증, 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- 마. 포상 및 준용(안 제9조~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시비지원

다. 입법예고: 2024. 09. 19. ~ 10. 10. (21일간)

- 방 법: 성북구보 및 홈페이지

- 결 과: 의견제출 없음

4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도시의 조성 및 정원문화의 발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,
- 2015년부터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되고 정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정서 및 치유적 역할과 관광적 효과가 있는 등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국가정원, 지방정원, 민간정원, 공동체정원 등 **법정정원**¹⁾에 대한 높

1)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) ② 정원은 조성·운영 주체,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국가정원: 국가가 조성·운영하는 정원
2. 지방정원: 지방자치단체가 조성·운영하는 정원
3. 민간정원: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·운영하는 정원
4. 공동체정원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, 마을·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(이하 “공동체”라 한다)이 공동으로 조성·운영하는 정원
5. 생활정원: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·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·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
6. 주제정원
 - 가. 교육정원: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
 - 나. 치유정원: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
 - 다. 실습정원: 정원 설계,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

은 관심을 나타내며 이를 지정 받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임.
정원이 가지는 치유기능, 소통과 교류의 공간, 기후조절, 미세먼지
저감, 일자리 창출, 교육, 도시 및 건물외관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
기능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정원조성 및 관리에 대한
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임.

○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- ▶ 안 제1조(목적)에서는 이 조례가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
관한 법률」에 따라 성북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
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
으로 한다고 명시하였고,
- ▶ 안 제2조(정의)에서는 정원, 정원문화, 마을정원사에 대해 규정하였음.
- ▶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에서는 구청장은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
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
정하였으며,

로 조성하는 정원

라. **모델정원**: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
용하여 조성하는 정원

마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

-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
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20. 12. 22.]

- ▶ 안 제4조(정원문화의 육성 등)에서는 구청장이 정원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 조성,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·개발·운영,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으며 구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명시하였음.
- ▶ 안 제5조(정원문화의 발굴·진흥 등)에서는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·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·수집·보급 및 관리,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, 기술지도 및 교육, 정보교류 및 협력, 자연학습, 행사,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, 간행물 발간, 콘테스트,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▶ 안 제6조(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등)에서는 구청장이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민의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, 구민 참여 활성화와 관련 활동을 하는 개인·법인·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.
- ▶ 안 제7조(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)에서는 구청장이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·운영할 수 있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는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도록 하였음.

- ▶ 안 제8조(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등)에서는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,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▶ 안 제9조(포상)에서는 정원문화 진흥·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본 조례안은 최근 도시 정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도심 내 정원 조성과 정원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대응하여 필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원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으며,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원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·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, 녹지환경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심은 주민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예산 확보 및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